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

※ 운영규정 3 발췌

제9조 【계약의 목적과 방법】

- ① (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은 계약기간 내 수급자의 시설 이용 및 시설의 서비스제공 전반에 관하여 시설(장), 수급자 및 보호자의 책임, 의무 및 권리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② (계약의 방법) 본 시설은 관계법령 및 시설 운영환경 등을 반영하여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제공급여의 종류와 범위 및 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 비용액, 신원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배상 책임 및 기타 수급자의 시설 이용 및 시설의 서비스제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이용 표준약관”을 구비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급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 【계약의 기간】

- ① (계약의 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또는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상 등급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계약의 갱신) 시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의 등급갱신, 급여제공 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등에 의하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기본 원칙) 본 시설의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각 연도별 관계법령상 급여의 범위, 장기요양등급별/급여제공시간별 급여 비용 및 비용청구 지침 등에 따라 산정하고, 이용계약상 명시한

다.

② (산정 기준)

1.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1항1호에 따라 당해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해당 부담비용을 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 단, 같은법 제40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28호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을 감경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 1항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비급여항목”이라 한다)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세부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가. 식재료비 (식사대 3,000원/식 및 간식대 1,000원/식)
 - 나. 이·미용비 (3,000원/회)
 - 다.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고시한 사항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6. 월 중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수령하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고지 내용 및 방법)

1. 시설은 이용계약 체결 시 해당 시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별/급여제공 시간별 급여비용, 본조2항3호에 해당

하는 항목별 비용이용 및 본조2항4호에서 6호까지의 내용을 이용계약에 명시하고, 이를 구두로 충실히 설명한 후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서명을 징구한다.

2. 시설은 위 1호의 내용을 시설 게시판에 상시 게시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용어의 정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법적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이용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이용계약상 명시된다.

1. 수급자가 표준약관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이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는 이용계약상 명시된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일체에 대한 적기 수납의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수급자 송영 시, 사전에 약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달하여 수급

자의 원활한 입소/귀가를 보조할 의무

5.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를 기관에 통지할 의무
6. 수급자 책무로 인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발생 시 원상회복 의무
7. 수급자 책무로 인한 타 수급자 및 시설 임·직원 상해 발생 시 피해 보상 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 ① (기간 만료) 이용계약은 기간만료 도래 시 자동 해지된다.
- ② (합의 해지) 수급자가 기간만료 도래 전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해지일 30일 전에 구두, 유선 혹은 서면의 방법으로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망 시 혹은 응급 사항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③ (자동 해지) 시설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용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두, 유선 혹은 서면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또는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할 경우
 4. 수급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5. 수급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상태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7. 신원인수인이 규정 제12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